

신영 TDF2040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펀드 코드: DE458]

| 투자 위험 등급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 | | | | | <p>신영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 운용전략 상 위험자산 투자비중 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p> <p>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외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원본손실위험, 증권가격 변동위험, 시장위험, 환율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 1 | 2 | 3 | 4 | 5 | 6 |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
| | | | | | | |

이 요약정보는 신영TDF204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 | | | | | | | | | | | |
|-----------------|--|-------------------------------|--------|--------|----------|---|-----|-----|-----|-------|-------|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p>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관련 증권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p>(1) 이 투자신탁은 노후자금 마련 등 장기적인 투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목표시점(Target Date)을 2040 년으로 상정하고, 주식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동적자산배분(글라이드패스) 전략을 활용합니다.</p> <p>(2) 이 투자신탁의 동적자산배분 전략은 Mercer Investments (HK) Limited 의 자문을 받아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합니다. 설정 초기 시점에는 국내·외 주식 관련 자산의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특정 목표시점(Target Date, 2040 년)에 근접할수록 국내·외 채권 관련자산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p> <p>※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p> | | | | | | | | | | |
| | 분류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 | | | | | | | | |
| 투자비용 | 클래스 종류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 | | |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 천원) | | | | | |
| | | 선취 판매수수료 | 총보수 | 판매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총보수·비용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 A(수수료선취-오프라인) | 납입금액의 1.0% 이내 | 0.975% | 0.63% | 0.970% | 1.291% | 228 | 362 | 503 | 806 | 1,708 |
| | 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없음 | 1.315% | 0.97% | 1.230% | 1.631% | 163 | 334 | 514 | 901 | 2,051 |
| | A-E(수수료선취-온라인) | 납입금액의 0.5% 이내 | 0.655% | 0.31% | 0.620% | 0.969% | 146 | 248 | 354 | 583 | 1,263 |
| C-E(수수료미징구-온라인) | 없음 | 0.825% | 0.48% | 0.840% | 1.139% | 114 | 233 | 359 | 629 | 1,433 | |

- (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 (주 2)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동종유형 : 해외 60 재간접형(투자신탁), 2024.01.31 공시 기준)
- (주 3) **종류 A 형과 종류 C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 형과 종류 Ce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 4)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8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류 | 최초설정일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 이후 |
|------------------|------------|-------------------------|-------------------------|-------------------------|-------------------------|--------|
| | | 2023/02/15 ~ 2024/02/14 | 2022/02/15 ~ 2024/02/14 | 2021/02/15 ~ 2024/02/14 | 2019/02/15 ~ 2024/02/14 | |
| C(수수료미징구 - 오프라인) | 2021-02-15 | 8.04 | 4.61 | 5.17 | - | 5.17 |
| 수익률 변동성(%) | 2021-02-15 | 8.12 | 10.65 | 9.63 | - | 9.63 |

- (주 1) 비교지수 : 없음
-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 | | | | 운용 경력년수 |
|-----|------|-------------|-----------|----------|---------------------|-------|--------|-------|---------|
| | | | | | 연평균 수익률(재간접-공모-국내외) | | | | |
| | | | 집합투자 기구 수 | 운용규모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1년 | 최근 2년 | | |
| 김대환 | 1971 | 책임 (본부장) | 16 개 | 13,237억원 | 12.30% | 7.92% | 12.30% | 7.92% | 19년 5개월 |
| 심창훈 | 1975 | 책임 (본부장) | 46 개 | 9,742억원 | 10.99% | 7.29% | | | 12년 4개월 |
| 배은영 | 1983 | 부책임 (선임운용역) | 12 개 | 1,026억원 | 12.30% | - | | | 5년 10개월 |

기준일: 2024년 2월 29일

-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운용전문인력

투자자
유의사항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원본 손실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주식가격 변동위험 |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
|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증권 등 가격변동위험 | 투자대상 증권 발행회사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 악화 및 시장에서의 증권 수급상황 등의 이유로 인해 투자대상 증권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해외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해외시장의 지정학적 위험 및 증권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국가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따른 위험에 매우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해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국가 정부 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
| 시장위험 |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계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신용위험 | 당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파생상품 레버리지위험 | 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환율변동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

주요투자
위험

| | | | |
|--|--|--|------------------------|
| | <p>과세위험</p> | <p>낮아집니다. 환위험노출과 관련하여서는 당투자신탁 위험관리의 환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 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 자산의 예: 해외투자 시 이익 및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 수익 등 * 비과세 대상 자산의 예: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 등</p> | |
| <p>매입 방법</p> <p>환매 방법</p> <p>환매 수수료</p> | <p>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p>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p>없음</p> | <p>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5 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10 영업일(D+9)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p> <p>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6 영업일(D+5)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11 영업일(D+10)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p> | |
| <p>기준가</p> | <p>산정방법</p> | <p>-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p> | |
| | <p>공시장소</p> | <p>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syfund.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p> | |
| <p>과세</p> | <p>구 분</p> <p>집합투자기구</p> <p>수익자</p> | <p>과세의 주요내용</p> <p>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p>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 |
| <p>전환절차 및 방법</p> | <p>해당 사항 없음</p> | | |
| <p>집합투자업자</p> | <p>신영자산운용(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길 6 (대표전화 : 02-6711-7500, 홈페이지 : www.syfund.co.kr)</p> | | |
| <p>모집기간</p> | <p>추가형으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p> | <p>모집.매출 총액</p> | <p>10 조 좌</p> |
| <p>효력발생일</p> | <p>2024년 3월 29일</p> | <p>존속 기간</p> | <p>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p> |
| <p>판매회사</p> | <p>집합투자업자(www.syfund.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p> | | |
| <p>참조</p> | <p>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3 부 1. 재무정보 (31 페이지) 및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39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 | |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류(Class) |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판매 수수 료 | 수수료 선취(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수수료 미징구(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판매 경로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온라인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무권유 저비용(G) |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기관(I) |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에 한하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입니다. |
| | 랩(W) |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 특정금전신탁, 집합투자기구 또는 보험회사의 변액보험(특별계정)에 한하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입니다. |
| | 개인연금 (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퇴직연금 (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
| | 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용(O)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 중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의해 가입 및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온라인슈 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집합투자기구
의
종류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syfund.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syfund.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syfund.co.kr)



QR코드를 스캔 해보세요.